

# 생활속 안전사고 『목졸림, 화상』 등 예방된다

창문블라인드, 온열팩 등 4개 품목의 안전기준 제정(안) 입안예고

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와 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유패드, 온열팩, 창문 블라인드, 휴대용 경보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(안)을 11.7.8일자로 입안예고하였다.

새롭게 만들어지는 4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살펴보면, 영아의 입에 직접 닿는 신체부위에 착용하는 수유패드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와 같이 품알데하이드 및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.

어린이용만 관리하고 있던 온열팩(일명 ‘주머니 난로’)에 성인용 제품도 포함시켜, 화상방지를 위해 제품의 최고 온도( $70^{\circ}\text{C}$ )를 설정하였고, 납,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안전요건도 규정하였다.

블라인드 줄로 인한 유아 및 아동의 목졸림 사망 및 상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블라인드 줄을 고정시키거나, 일정하중( $10\text{kg}$ 이상)이 가해질 경우 줄의 연결고리가 분리되거나 끊어지도록 하였으며, 위급 상황시 큰 소리를 발생 시켜 주위에 위험을 알리는 휴대용 경보기는, 음량 표시의 불량으로 사용자의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, 품질수준도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사용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 표시를 의무화하고, 높은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하였다. 기술표준원은 상기 4개 품목의 안전기준(안)이 확정되면 제정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.

\* 문의 :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(02-509-7238)

